

제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1413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재판경과

제주지방법원 2022. 12. 16 선고 2021나14137 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소1612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B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현

담당변호사 한대삼

피고, 피항소인C

변론 종결 2022. 11. 4.

판결 선고 2022. 12. 16.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가소16122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가.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원고 A에게 1,394,243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2.부터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8,066,937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2.부터, 1,066,937원에 대하여는 2022. 9. 3.부터 각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선정자 D에게 11,616,390원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 3. 22.부터, 4,616,390원에 대하여는 2022. 9. 3.부터 각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394,243원,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8,066,937원, 선정자 D에게 11,616,39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원고 A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그에 따라 그 범위 내에서 항소취지도 감축되었다.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 원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 D(이하 이들 모두를 칭할 때는 '원고들'이라 한다)와 피고는

2016. 12.경 "제주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피고 명의로 분양받아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 30. 시행사인 G 유한회사(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 75,320,855원을 아래와 같이 분담하여 지급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제주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1	원고 A	4,320,855원
2	원고(선정당사자) B	25,000,000원
3	선정자 D	36,000,000원
4	피고	10,000,000원
합계	75,320,855원	

다. 피고는 2017. 1. 4. G, H 주식회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양대금을 753,208,550원으로 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내용 중 분양대금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시기 등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분양계약서>

173,540,000원	526,971,409원	52,697,141원	753,208,550원
--------------	--------------	-------------	--------------

납부일시	2017. 12. 20.	2018. 5. 20.	2018. 8. 20.	납부지정일
금액	225,962,566원	112,981,283원	112,981,283원	225,962,565원

라. 피고는 2017. 12. 20.경 중도금 대출을 받아 G에 1차 중도금 225,962,566원을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8. 2. 2. I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포괄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I는 2018. 2. 2. 제주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사건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I로부터 2018. 2. 2.

5,000,000원, 2018. 2. 5. 1,500,000원의 합계 6,500,000원(=5,000,000원+1,500,000원)을 받았다.

바. 한편, 피고는 제주세무서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계약금과 1차 중도금 납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으로 2017. 8. 8. 5,269,160원, 2018. 4. 10. 15,808,410원의 합계 21,077,570원(=5,269,160원+15,808,410원)을 수령하였다.

사. I와 G는 2021. 7.경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합의해제하기로 하였고, 'G는 I에게 계약금 75,320,855원 및 합의금 3,000,000원의 합계 78,320,855원을 반환하고, I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아. I는 2021. 9. 7. 이 사건 사업자등록을 휴업(폐업)하였고, 이에 따라 제주세무서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과 관련하여 피고와 I가 조기환급 받은 부가가치세 36,876,72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6, 7, 9, 10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민법상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데(민법 제703조), 원고들과 피고는 2016. 12.경 이 사건 부동산의 분양대금을 각자 출자하는 방식으로 공동매수하고, 위 부동산을 전매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약정에 따른 동업관계는 민법상 조합관계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2) 피고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으로 2017. 8. 8. 5,269,160원, 2018. 4. 10. 15,808,410원의 합계 21,077,570원(=5,269,160원+15,808,41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과 조합원의 공동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및 그 과실 등은 조합재산을 이루고,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며, 민법상 조합의 재산은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고 할 것이다(민법 제704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과의 동업약정에 따라 이 사건 조합의 업무처리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를 취득한 것인바, 피고가 조합의 업무처리 과정에서 취득한 금전 기타의 물건은 조합에 인도하여야 할 조합재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 지위에서 제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은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어야 하는 합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 즉 ① 피고가 2018. 2. 2. I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상 매수인 지위를 포괄양도한 점, ② 피고는 I에게 매수인 지위를 넘기는 대가로 I로부터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출자금 10,000,000원을 받기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는 I로부터 이 사건 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한 날인 2018. 2. 2. 5,000,000원을 받았고, 2018. 2. 5. 1,500,000원을 추가로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2018. 2. 2.경 이 사건 조합을 탈퇴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4) 조합에서 조합원 1인이 탈퇴하면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들의 합유에 속하여 기존의 공동사업은 남은 조합원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고(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54458 판결 참조), 조합의 탈퇴자에 대한 채권은 잔존 조합원들에게 귀속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4다49693, 49709 판결 참조).

피고가 2018. 2. 2. 이 사건 조합에서 탈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합유재산인 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금 21,077,570원을 잔존 조합원인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5) 조합원들이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하고(민법 제711조 제1항), 탈퇴한 조합원의 합유지분은 잔존 조합원 전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5다7405 판결 참조).

원고들의 출자가액의 비율은 원고 A '4,320,855/65,320,855', 원고(선정당사자) B '25,000,000/65,320,855', 선정자 D '36,000,000/65,320,855'이므로 피고는, ① 원고 A에게 1,394,243원(=21,077,570원×4,320,855/65,320,85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2.부터 원고 A이 구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선정당사자) B에게

8,066,937원(=21,077,570원×25,000,000/65,320,855)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2.부터, 1,066,937원에 대하여는 2022.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3.부터 각 원고(선정당사자) B가 구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③ 선정자 D에게 11,616,390원(=21,077,570원×36,000,000/65,320,855) 및 그중 7,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1. 3. 22.부터, 4,616,390원에 대하여는 2022. 9. 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2. 9. 3.부터 각 선정자 D가 구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2. 12.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주장 피고는 "제주세무서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환급해 준 것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대한 분배약정은 없었으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주세무서로부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피고의 개인재산이 아닌 이 사건 조합에 귀속되어야 하는 합유재산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선정당사자)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과 위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선정당사자)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각 금액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문종철

판사최석준

판사강미혜

별지